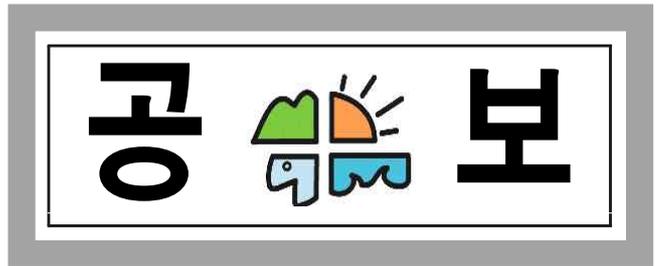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901호 2014년 11월 20일(목)

공 고

-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2

회 램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 및 『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1월 20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

2. 개정이유

-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집·운반의 물량 감소 및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분뇨 수집·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인상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 (별표 5)
 - 수거식화장실 : 당초 11.5원/ℓ에서 13.5원/ℓ으로 2원 인상, 인상율 17.4%
 -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: 당초 15.0원/ℓ에서 17.0원/ℓ으로 2원 인상, 인상율 13.3%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수질환경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217-100 / 속초시 해오름로 99(대포동)
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
(전화 : 033-639-2932, FAX : 033-639-2497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주무관 임진우(033-639-293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조례 제 호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(제19조제1항)

1. 수거식화장실

부과기준	수 수 료(원)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ℓ 당	<u>11.5</u>	2.3	<u>13.8</u>

2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

부과기준	수 수 료(원)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ℓ 당	<u>15</u>	2.3	<u>17.3</u>

※ “수집·운반” 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

※ “처리” 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

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(제19조제1항 관련)

1. 수거식화장실

부과기준	수 수 료(원)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ℓ 당	<u>13.5</u>	2.3	<u>15.8</u>

2.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

부과기준	수 수 료(원)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ℓ 당	<u>17</u>	2.3	<u>19.3</u>

※ “수집·운반” 은 분뇨의 수집·운반(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)수수료를 말함

※ “처리” 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

【관계법령 발취】

【하수도법】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【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】

제19조(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)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·징수한다.

1. 분뇨(오수처리시설·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)의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(算定)하여 부과·징수한다.
2. 분뇨의 수집·운반을 분뇨수집·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3. 분뇨수집·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